

(나로스쿨재활복지센터)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4조(계약의 목적)

- 1.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- 2.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5조(계약의 기간)

- 1.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 - 2.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
 - 3.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
 - 4.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- ※ 4 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(안내)로서 이용료에 적용 (문자 URL , 카톡) 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6조(장기요양급여 계약)

- 1.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2.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(계약 당사자 / 계약 기간 /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 /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)
- 3.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.
- 4.장기요양기관은 1,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

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(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)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

제7조(신원인수인의 권리)

1.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- ①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
- ③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
- ④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⑤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⑥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⑦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⑧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제8조(신원인수인의 의무)

- 1.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2.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3.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4.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
- 5.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제9조(계약의 해지)

- 1.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2.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①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②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③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- ④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- ⑤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- ⑥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